

광주지방법원 2021. 4. 15 선고 2020가단50181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명진

피고B

변론 종결 2021. 3. 18.

판결 선고 2021. 4. 15.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와 C 사이의 2015. 1. 28.자 채권양도계약을 31,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C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던 사람이고, 피고는 C의 배우자이자 E의 대표자이던 사람이다.

나. 한국산업은행은 C의 연대보증 하에 D에게 2011. 11. 8. 10억 원, 5억 원, 8억 원, 2012. 11. 27. 64,005,864원을 각 지연이자 연 17%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였는데, 이후 D는 원리금의 지급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다. 원고는 한국산업은행의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최종 양수한 후 채무자 D 및 연대보증인 C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8차전8456호로 이 사건 대출금 중 일부인 원금 10억 원과 이자 등 1,916,845,811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8. 6. 8. 'D와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16,845,811원 및 그 중 1,000,000,000원에 대하여 지급명령결정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D와 C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D는 2013. 1. 28. 대구지방법원 2013회합1호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가 2013. 10. 7. 회생절차가 폐지되었고, 2019. 12. 2. 해산간주되었다.

마. 피고는 2014. 9. 1. 전자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E를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2017. 1. 1. 폐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

원고는 2019. 7. 24.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9가단524605 사해행위취소의 소(이하 '전소'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2020. 1. 21.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전소에서 피고와 C 사이에 있었던 2015. 6. 16.자 금전증여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고 있고, 이 사건 소에서는 주위적으로 피고와 D 사이의 2015. 2. 17.자 및 2015. 2. 26.자 각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각 2,800만원, 3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를, 예비적으로 3,100만 원의 부당이득반환을 각 구하고 있는데, 원고가 전소에서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취소를 구하는 증여계약상 증여 금원에는 원고가 이 사건 소에서 사해행위의 취소 또는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금원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 사건 소는 전소와 동일한 소송으로 중복제소금지에 위반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전소에서 주식회사 F가 발행한 C 명의의 10,000주에 관하여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2017. 12. 31.자 주식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그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구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0. 11. 17. 위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이 사건 소에서 피고와 C 사이의 2015. 1. 28.자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고 있는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전소와 이 사건 소는 그 취소를 구하는 사해행위의 대상이 달라 동일한 소송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주위적으로, 채무자 C은 임의경매절차에서 D 소유의 기계기구를 낙찰받은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로부터 위 기계기구를 매수한 후 위 기계기구 중 수평강화로 및 유리절단기를 다시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에 매도한 매매계약의 실제 당사자이고, 위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채권은 채무자 C에게 속하는 적극재산이므로, 채무자 C이 다중 채무로 인한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위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채무자 C 및 피고가 위 기계기구를 매도할 수 있는 권리는 G로부터 위 기계기구를 구입한 이후 시점에서야 비로소 가능한데, 채무자 C과 G 사이에 매매계약이 2015. 1. 28. 있었으므로, 결국 채무자 C과 피고 사이에 2015. 1. 28. 묵시적 채권양도계약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채권양수인인 피고는 H로부터 2015. 2. 17. 1억 원, 2015. 2. 26. 1,000만 원을 이미 변제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금

3,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H는 E를 운영하는 피고 명의의 계좌로 2015. 2. 17. 1억 원, 2015. 2. 26. 1,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는데, H가 입금한 위 금원은 채무자 C이 운영하였던 D와 관련된 금원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할 것이고, 이는 다중 채무로 인한 강제집행 등을 염려한 채무자 D가 H로부터 입금받을 매출금원을 배우자인 피고가 운영하는 E로 하여금 수령하게 한 것이므로, 채무자인 D는 위 금원 상당의 손실을 입었고, E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 그런데 D가 피고에게 위 1억 1,000만 원의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채무자인 D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중 3,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4, 5, 9 내지 16, 2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H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서대구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이 법원의 IBK기업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 소유의 토지, 건물 및 기계기구(공작물)에 관하여 2013. 10.경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1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위 기계기구가 2014. 12. 16. G에게 매각되었는데, G는 2015. 1. 28. E에게 위 기계기구를 대금 2억 5,000만 원(부가세 별도)에 매도한 사실, E는 그 매매대금으로 피고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G에게 2015. 1. 28. 7,000만 원, 2015. 2. 5. 7,000만 원, 2015. 3. 6. 1억 3,500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 E는 2015. 1. 15. H에게 위 기계기구 중 수평강화로 및 유리절단기를 대금 3억 2,500만 원(부가세 별도)에 매도하고, H로부터 피고 명의의 계좌로 2015. 1. 28. 2억 원, 2015. 2. 17. 1억 원, 2015. 2. 26. 3,000만 원, 2015. 3. 11. 1,000만 원, 2015. 3. 12. 2,000만 원, 2015. 3. 14. 520만 원을 각 송금받은 사실, E는 H에게 2015. 2. 25. 공급가액 3억 3,000만 원(부가세 3,300만 원), 공급가액 2,200만 원(부가세 220만 원)인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G로부터 수평강화로 및 유리절단기를 매수한 매매계약 당사자 및 H에게 이를 매도한 계약 당사자는 모두 피고가 운영하는 E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채무자 C(또는 D)이 위 매매계약의 실제 당사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G로부터 수평강화로 및 유리절단기를 매수한 계약 당사자 및 H에게 이를 매도한 계약 당사자가 모두 피고가 운영하는 E임은 위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고, 피고가 H로부터 2015. 2. 17. 1억 원, 2015. 2. 26. 1,000만 원을 각 송금받은 것은 위 매매계약에 따른 정당한 것이므로, 피고가 송금받은 위 금원이 부당이득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이차웅

- 1) 원고가 청구취지를 변경하기 전의 본안 전 항변임
- 2) 원고가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면서 사해행위의 채무자를 D 또는 C으로 혼용하고 있으나 2021. 3. 17.자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에서 최종적으로 'C과 피고 사이의 2015. 1. 28.자 채권양도계약'을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으로 특정하였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해행위의 채무자를 C으로 특정한 것으로 선택한다.